2023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 국세청, 2023. 4

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정환경 조성

1 2023년 국세행정운영방안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

-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등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고,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국세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성실납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수출 증진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복지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확대된 장려금 및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더욱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과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민경제의 회복 지원을 위해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 운영하되, 공정한 경쟁 및 세부담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탈세 및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인력과 조직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 및 성실납세 지원

납세자 중심의 공감소통을 위한 「세무지원 소통의 달」 운영

○ 국세청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을 활성화하고, 매 분기 한 달간을 세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납세자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청년 · 중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한 세무지원을 활성화하여,

-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안내, 세금신고 · 납부, 상담 및 민원 등 모든 납세과정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는 서비스 세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내용 확인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덜고,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통한 신고수준 향상과 신고 후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의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사전지원 본연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불성실 사업자 위주의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불성실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여 실시하되

-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추진

조사기간 최소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운영

일정요건을 갖춘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비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회계 및

세무분야 등에 대한 지도 ·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 실시

구체적 탈루 혐의 시 조사 실시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최소화하되
-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II 기업경영과 세무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빼먹기,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소멸시효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 답습 등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이 일시 추징되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는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우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은 물론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불성실 세금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들 입력자료를 토대로 전 법인을 상대로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신고내용을 정밀조사 받게 됩니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에 대한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기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며, 대부분 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 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불성실 신고 사례

최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 가장거래를 이용하여 대표자가 가지급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허위 · 가장 거래는 부인되고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되며 불성실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불성실 신고 사례〉

불성실 신고 사례	과세 내용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바로 그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고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회피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실제로 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창원지방법원2021구합51605, '22.02.10. 등)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대표자가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대표자가 취득한 특허권의 실질 소유는 법인으로 보고 특허권 양도대금 손금부인 및 상여처분(창원지방법원2022구합50241, '22.10.27. 등)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손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부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징벌적 가산세 40%, 국제거래 60%)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변칙처리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됨은 물론, 기업자금의 횡령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 · 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비출자 임원, 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을 제외한 사람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 분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5 주금(자본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가장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 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6 분식결산과 세무

분식결산이란?

분식결산(window dressing settlement)은 일반적인 탈세와 반대로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여 매출액이나 이익을 크게 부풀려 결산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자산과 매출을 실제보다 더 많이 계상하거나, 비용과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식결산의 이유와 피해

분식결산은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업의 영업실적을 좋게 조작함으로써 기업의 신인도와 주가를 높여 금융·증권시장 등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거나, 기업주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하여 대부분 행하여집니다.

이와 같은 분식결산은 해당 기업이 공시한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채권자·주주에게 많은 손실을 끼치게 되며, 외국투자자 등에게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을 주어 외국투자자본의 국내증시 투자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분식결산 기업은 투자자의 배당압력 및 세금 과다납부 등으로 더 큰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분식결산과 세무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신청하는 경우 분식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분식결산도 세금탈루와 같은 수준으로 엄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분식결산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환급하지 않고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세무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7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어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되고, 결국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Ⅲ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⑦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⑧ 위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 rowspan="2">내용</th><th colspan="2">수도권</th><th rowspan="2">수도권 이외지역</th></tr>
<tr><th>과밀억제권역</th><th>기타</th></tr>
<tr><td>지역</td><td colspan="2"></td><td>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td><td>과밀억제권역 이외 수도권 지역</td><td>수도권 이외지역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td></tr>
<tr><td>창업중소기업감면 (조특법§6)</td><td colspan="2">5년간 50~100% 세액감면</td><td>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td><td colspan="2">50% ~ 10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td></tr>
<tr><td rowspan="9">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td><td rowspan="9">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알뜰주유소 제외)</td><td rowspan="4">소기업</td><td colspan="2">의료, 도・소매업 10%</td><td></td></tr>
<tr><td colspan="2">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td><td></td></tr>
<tr><td colspan="2">알뜰주유소 20%</td><td></td></tr>
<tr><td colspan="2">기타감면업종 20%</td><td>기타감면업종 30%</td></tr>
<tr><td rowspan="5">중기업</td><td colspan="2" rowspan="5">알뜰주유소 10%</td><td>의료, 도・소매업 5%</td></tr>
<tr><td>통관대리 등 관련 서비스 7.5%</td></tr>
<tr><td>기타 감면업종 15%</td></tr>
<tr><td>알뜰주유소 15%</td></tr>
<tr><td colspan="3">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td><td>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td><td colspan="2">공제 허용</td></tr>
</table>

※ 알뜰주유소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22.1.1.~'23.12.31.까지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3.1.1. 신고분부터 특례적용,

※ 수도권 내 지식기반사업을 영위하는 중기업 감면 종료(조특법 §7)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4.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5년(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수도권과밀역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구 분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1990.1.1. 이후 사업개시
일반기업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정보통신장비 등 ○)
중소기업		x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 §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 §7)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조특법 §30의4)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30%)(조특법 §29의3)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 §7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 보전액의 15%)(조특법 §30의3)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5%)(조특법 §19)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 §132)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 대손금 특례(법인세법령 §19)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 §29의3)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인세법 §72)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세법 §128) -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인세법 §64)

5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 요 내 용
신규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3백만원(최대 3년)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 §30의4) -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75%, 그 외 50%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 §30) - 3년간 70% (청년 5년간 90%)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 -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
재고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
	▪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 §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5%(중견 10%, 중소 20%) 세액공제

6 시설투자에 따른 세제혜택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세액공제</td><td>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반도체 22개, 이차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 총 4개분야 43개 기술 지정
<table>
<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8</td><td>8</td><td>16</td><td>4</td></tr>
</table>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td></tr>
</table>

세액공제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 [국가전략기술시설 공제세액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기타 조세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의4)

7 R&D 세제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등 연구 ·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 분	내 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코스닥상장중견) 당기발생액 25%+(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5%한도) * (대기업 및 기타 중견기업) 당기발생액 2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발생액 30%(중소 40%)+(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중소 25%, 중견 8%,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지출액-직전 과세연도 지출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 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합병·분할시 조세지원	-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 •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 -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 •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 •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
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	-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6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⑤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①~④의 요건을 충족하고, 20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2년 인하분 → '23.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자 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10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도 개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100의32)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과세대상 법인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신고

내국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간 계속 적용

- 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70%－(투자금액＋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15%－(임금증가금액+상생협력지출금액)]×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1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1나2)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
·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50%))×(주식보유비율−0%(5%,10%))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2.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3.6.30.)

13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2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3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3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해당사업부문의

매출액/ 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제도 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확인

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15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 등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대상 계좌 :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미신고시 제재 :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하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내용]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율
20억이하	해당금액 × 10%
20억초과 50억이하	2억원 + 20억 초과금액 × 15%
50억초과	6억5천만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20억원 한도

- 미신고·과소신고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시 과태료(20%) 부과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인적사항 등 공개 및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 벌금)등의 불이익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계열그룹 내 개별법인에 대한 설명(조직, 사업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정보 및 재무 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그룹 전체의 조직 구조,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내역, 금융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현지법인 목록 및 주요 사업활동 내용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개별 법인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 연간 500억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①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 1조원 초과 내국법인(최종 모회사)
  ② 직전연도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는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교환되는 경우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교환되는 경우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원

Ⅲ 세정지원

1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란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의 세정지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 기존의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기존의 세정지원 대상이었던 스타트업, 혁신기업,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기업 외에 수출 증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수출기업, 신산업 분야 및 구조조정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	• 혁신성장기업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일자리창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현행	• 혁신성장기업 • 수출 중소기업 •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구조조정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경정청구 우선 처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유동성지원과 함께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 등 경영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가된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세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홈택스 전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중소기업에는 지방국세청에 상담전담반을 설치하여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정지원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공지사항]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적법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행정심(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심사청구) 인용사건의 인용원인을 납세자 관점에서 분석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사실조사 소홀, 법령적용 잘못 등에 있는 경우 조사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과세를 유발하는 잘못된 법령 · 제도 등을 발굴 · 개선하여 유사한 부실과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운영

조사나 과세자료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하는 사실판단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 관련 각종 법령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세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공무원도 과세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여 과세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t)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관련 누리집] ⇨ [국세법령정보]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의 시행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는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과세관청과의 분쟁이 예방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사업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및 이용방법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클릭하면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PDF로 변환하여 올리는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에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 · 인력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2020.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⑰ 법 제 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신청인)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본점 관할 지방청) *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찾기 연구>조회하기 사전심사신청
신청대상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며, 금액 제한 없음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다만, 세액공제 신청누락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전에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연구 · 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첨부 서류	① 연구개발비 명세서 ② 연구개발 보고서 3기타 연구개발 관련 서류 등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제도 개요 및 신청서 서식 등을 샘플로 작성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제도

사전심사 제도의 효력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8.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신청방법 및 컨설팅 제공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특정한 거래나 행위가 개시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경정청구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와 특정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국세정책/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방법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컨설팅' 조회

컨설팅 검토 결과는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공제·감면 컨설팅의 혜택은

컨설팅 받은 내용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한 경우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Ⅳ 주요 세법 개정내용

1 법인세 세율 인하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table>
<tr><th>종전</th><th>개정</th></tr>
<tr><td>■ 법인세율 과세체계
ㅇ 세율 및 과세표준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10%</td></tr>
<tr><td>2~200억원</td><td>20%</td></tr>
<tr><td>200~3,000억원</td><td>22%</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5%</td></tr>
</table></td><td>■ 법인세율 인하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table>
<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r><td>2억원 이하</td><td>9%</td></tr>
<tr><td>2~200억원</td><td>19%</td></tr>
<tr><td>200~3,000억원</td><td>21%</td></tr>
<tr><td>3,000억원 초과</td><td>24%</td></tr>
</table></td></tr>
</table>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를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ㅇ 60% → 80% ㅇ 좌동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4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접대비의 손금 불산입	■ 명칭변경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기부금의 명칭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명확화

■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손금 대상 기부금 종류 ❶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❷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❶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❷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법인사업자에 대한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 신설	■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ㅇ (발행대상)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 ㅇ (신청방법) 신청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 '23.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경제안보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table>
<tr><th>종전</th><th>개정</th></tr>
<tr><td>■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ㅇ 국가전략기술 단계 신설
→ 3개 분야 36개 기술

ㅇ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추가 우대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table>
<tr><th>R&D 비용(%)</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2</td><td>8</td><td>25</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 colspan="2">20~30</td><td>30~4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40</td><td>40~50</td></tr>
</table>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table>
<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3</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5</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6</td><td>8</td><td>16</td><td>4</td></tr>
</table></td>
<td>■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반도체 분야 기술추가
ㅇ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4개분야 43개 기술
① 반도체 22개, ② 2차전지 9개, ③ 백신 7개, ④ 디스플레이 5개
- 반도체 분야 신규 2개 기술 추가
- 디스플레이 분야 5개(패널, 소재·부품·장비)
- R&D비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table>
<tr><th>R&D 비용(%)</th><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2</td><td>8</td><td>25</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20~30</td><td>20~40</td><td>30~40</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 colspan="2">30~40</td><td>40~50</td></tr>
</table>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table>
<tr><th rowspan="2">시설투자(%)</th><th colspan="3">당기분</th><th rowspan="2">증가분</th></tr>
<tr><th>대</th><th>중견</th><th>중소</th></tr>
<tr><td>일 반</td><td>1</td><td>5</td><td>10</td><td rowspan="2">3</td></tr>
<tr><td>신성장・원천기술</td><td>3</td><td>6</td><td>12</td></tr>
<tr><td>국가전략기술</td><td>8</td><td>8</td><td>16</td><td>4</td></tr>
</table></td></tr>
</table>

→ '21.7.1. ~ '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종전	개정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요건) ❶또는 ❷ ❶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❷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2년간 50% ㅇ (적용기한) '24.12.31.	■ 감면요건 완화 ㅇ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 연장 - (완전복귀) 2년 이내→3년 이내 - (부분복귀) 2년 이내→3년 이내 ㅇ 증설범위 확대 - (공장) 기존 사업장*내 사업용 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 산업부장간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받은 기존사업장 유휴면적

→ '23.2.28. 이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종전

■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❶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장애인 등	1,100	1,300*	800	900*	400	500*
기 타	700	770	450	450	-	-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ㅇ (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 (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개정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3년 지원)		중견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❷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사용자분 사회보험료×공제율

구 분	중소 (공제율)
상시근로자 (2년 지원)	50%**
청년*, 경력단절여성(2년 지원)	100%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❸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공제율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경력단절여성(2년 지원)	30%	15%

❹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000	700

❺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공제율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율	
	중소	중견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30%	15%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인원×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육아휴직 복귀자(1년 지원)	1,300	900

-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10 근로소득 증대세제 재설계

종전	개정
■ 근로소득증대세제	■ 적용기한 연장 및 대기업 적용배제
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ㅇ (세액공제)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적용기한) '25.12.31.

11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종전	개정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中企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원지원자금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장부가액의3% 세액공제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시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 <추 가>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동) ㅇ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4.12.31.

→ ' 2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